

의 정 정 보

2007 - 1

1. 8

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

< 공무원직제 분야 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공무원 직군·직렬 분류체계 개편	· 일반직 : 8직군 38직렬 72직류 · 기능직 : 10직군 22직렬 36직류	소수 유사직렬 통합으로 대(大) 직렬 체제로 개편하여 자치단체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 · 일반직 : 2직군 21직렬 77직류 · 기능직 : 9직군 22직렬 36직류	지방공무원임용령 (2007. 7.1 예정)

< 지방재정 분야 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 지방예산편성과정 에의 주민참여 제도 도입	〈신설〉	○ 지방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	지방재정법 제39조 (’07.1.1)
○ 사업 예산제도 도입 운영	○ 품목별예산제도 운영	○ 세항·목 등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을 분야· 부문 정책사업 등 사업단위로 분류하는 예산운영체계 개편	지방재정법 제5조 (’07.1.1)
○ 일반재정보전금 제도 개선	○ 일반재정보전금 산출방식 - 인구 60% - 징수실적 40% - (신설)	○ 일반재정보전금 산출방식 - 인구 50% - 징수실적 40% - 재정력지수 10%	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(’07.1.1)

< 문화예술체육 분야 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	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가능	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시·군·구에 등록해야 함	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(2007.1.1)
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	결과물 환전가능	경품, 점수, 게임머니 등 결과물을 환전, 환전 알선 등 행위 금지	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(2007.4월)
사행성 게임물 기준변경		시간당 투입금액 1만원, 1회 게임경품 2만원, 1시간당 최대당첨금액 2만원 이하	재등급분류 및 신규게임물
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	<신설>	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촉진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가맹단체 통합 지도 및 우수선수 양성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⇒ 「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」 설립	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2 (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)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4조 (시·도지부 설치)

< 경제 분야 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	○지원사업 대상으로 재래시장만 한정	○지원사업 대상이 재래시장 및 <u>상점가</u> 로 확대	○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, '07.1.1
○소상공인 금융지원	<신 설>	○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 기금에서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리에 대하여 1.5%를 도에서 이차보전 지원제도	○중소기업 중 앙 회 와 MOU 체결 '07. 1월중

< 농정 분야 >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농지내 축사설치 용이	○농지의 정의에 축사부지는 포함되지 않아, -농지내에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(신고)를 거쳐야 함	○축사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(신고)를 거치지 않고 농지내에 축사설치 가능	○농지법 (2006년 공포 및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)
○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 확대	○지원대상 -육지 : 전체면 경지경사도 14% 이상 -도서 :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	○지역사회 유지 활성화,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오지면과 도서에 대해 기준 완화 - 육지 : 일반면 14% 오지면 7% - 도서 : 전도서	○농림사업시행 지침 개정(미정)
○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	○지원대상 -만5세 이하 아동 ○지원대상 지역 -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	○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 (‘00.3.1~’01.2.28 출생)까지 지원대상 확대 ○지원대상 지역을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	○농림사업시행 지침 (‘07.1.1) ○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(‘06.4.28 개정)
○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	○지원대상 - 만5세 이하 아동 ○지원대상 지역 -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○4세이하 지원단가 - 정부보육료 단가의 25%	○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 (‘00.3.1~’01.2.28 출생)까지 지원대상 확대 ○지원대상 지역을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○4세이하 지원단가를 정부 보육료 단가의 35%로 인상	○농림사업시행 지침(‘07.1.1) ○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(‘06.4.28개정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사고농가 영농도우미, 농촌고령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	○실시지역 : 82개 시군 ○영농도우미 - 대상 : 3ha미만, 65세미만 으로 2주이상 사고농가 - 지원내용 : 10일 이내 · 남 39,900원/일 · 여 26,000원/일 ○가사도우미 - 대상 : 65세이상 고령단독, 65세미만 사고농가 등	○실시지역 : 전국 ○영농도우미 - 대상 : 5ha미만, 69세이하로 2주이상 사고농가 - 지원내용 : 10일 이내 · 35,000원/일 ○가사도우미 - 대상 : 65세이상 농촌 고령 가구, 65세미만 사고 농가 등	○농림사업시행 지침('07.1.1.)
○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방문 한국어교육 등 지원	<신 설>	○실시지역 : 50개 시·군 ○지원대상 :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및 가족 ○지원내용 - 방문 한국어 교육 : 5개월 (40주)간 주 3회방문 한국어 교육 실시 - 부부교실, 가족캠프, 모국방문 비용지원 등	○농림사업시행 지침('07.1.1.)
○농업·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 추진	<신 설>	○ 농촌지역의 특성을 지닌 잠재자원(자연경관과 전통 역사, 음식, 특산물 등의 문화·사회자원)을 활용하여 특정테마의 휴양·레저·체험이 어우러진 농업·농촌테마공원 조성 - 생태공원, 학습전시관, 농업·농촌 체험공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,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 등은 민간참여 유도 - 사업비는 50억원 범위내 (국고 50%, 지방비50%) 에서 지원 - '07년 예산(균특회계)으로 4개지구 1,570백만원 지원 * 경기 안성, 충북 음성, 충남 서천, 전남 영광	○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 진에 관한 특 별법('04.3.5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 행 일
○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기준 등급확대	○보건복지부에서 지원 ○지원기준 - 1-13등급은 1/2 정률지원 - 13등급초과는 13 등급 보험료의 1/2 정액지원 ○지원대상은 농어업인에게 지원. 다만, 다음에 해당 하는 자는 제외 - 농업소득·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-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(간이과세자 및 농업·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제외)	○'07년부터 농림부로 이관 지원 ○ 지원기준등급 상향조정 - 1-14등급은 1/2 정률지원 - 14등급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1/2 정액지원	○농어업인 연금 보 험 료 경 감 지원시행지침 (‘07.1.1)
○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	○인증종류가 복잡하고, 인증유효기간이 짧음 -인증종류 : 유기농산물, 전환기유기농산물, 무농약 농산물, 저농약농산물(4종류) -인증유효기간 : 1년 ○“생산자”와 “수입자”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음	○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, 인증유효기간이 연장됨 -인증종류 : 유기농산물, 무농약 농산물(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), 저농약농산물(3종류) -인증유효기간 : 2년 (유기농산물 : 1년) ○“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”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음 ○인증관리가 강화됨 -부정행위자는 1년간 인증 신청이 금지되고, 인증기관은 5년마다 자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함 ○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도입 -유통자재의 주성분, 유기 농업에 사용 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농업인이 자재선택시 동 정보를 참고 할 수 있도록 함	○친 환 경 농 업 육성법(07.3.28)

제목	중점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 농림기술개발 사업과제구분 변경 및 지원 규모 확대	○ 핵심전략과제 : 5년 10억원 ○ 농산업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기술 : 3년 5억원	○ 기획과제(정부지정공모과제) - 5년 50억원 이내 ○ 일반과제(자유응모과제) - 5년 10억원 이내	○ 농림사업시행 지침('07.1.1)
○ 쌀브랜드육성 사업 실시	<신 설>	○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8개소(RPC) 국고보조 72억원 지원	○ 농림사업시행 지침('07.1.1)
○ 쌀·현미의 품종명 표시 방법 변경	○ 쌀·현미의 품종명을 표시한 경우의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 한도 미설정	○ 쌀·현미에 표시된 품종명과 다른 품종의 혼입이 20%를 초과하면 거짓표시로 처벌 -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	○ 양곡관리법 ('07.1.1)
○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	<신 설>	○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과실의 대표 브랜드 육성 지원 - 과실의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를 통해 일반과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과실 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및 광역단위로 구분하여 추진 - '07년도에 38억원의 예산을 투입, 전국 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, 광역공동 브랜드 7개소를 발굴육성지원	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예산 확정 시 '07.1.1 시행)
○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지원요건 강화 - 매입제외 과원 중 예외	○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	○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	○ 농림사업시행 지침('07.1.1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- 지원제외자 - 기타 행정사항	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○ ‘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지원 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이상 경작된 과원 ⇒ 일정기간 경작을 의무적으로 한 후 매도토록 하여 투기 방지 ○ 허위·담합으로 지원 받은 자 ○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⇒ 부정지원자에 대한 지원 제한 ○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지원자 행정기관 통보 의무화 ⇒ 과원폐원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되는 행위 사전방지	○ 농림사업시행 지침(‘07.1.1)
○ 배추·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 시장 전면 실시	○ 배추·무는 전국 공영도매 시장에 산물 또는 포장출하 모두 가능하고, 농산물표준 규격으로 포장출하 하는 경우 포장제비 등을 지원 * 배추는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포장유통 시범사업을 ‘06년 9월 부터 실시	○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배추·무의 도매시장내 다듬기(재선별, 재포장)가 금지되어 산물출하가 제한됨	○ 폐기물관리법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(2007.1.1부터 시행)
○ 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 금리인하	○ 우수식품 품질인증(HACCP, ISO22000)을 받고자 하는 식품관련 업체에 대해 연 4%의 금리로(단, 농업·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,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의 경우는 3%) 시설투자 융자 지원	○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자금 금리를 4%에서 3%에서 농업인·비농업인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% 인하	○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(가금의 용도)
○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대책 사업 지원	<신 설>	○ 기존 비닐하우스중 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사업 추진(‘07~’11) - ‘07예산안 : 127억원(융자 100%, 금리 1.5%, 3년거치 7년상환) - 사업내용 : 보강지주, 조라개 교체, 기초 및 온풍덕트 설치 등	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7.1.1부터 시행) * 신규지원 근거 -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(재해예방 지원) -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(가금지원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	○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실시 하였으나, ○음식점에서 식육을 조리 판매시 원산지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	○'07.1.1일부터 300㎡이상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(한우·육우·젖소) 표시의무화 ○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*원산지·식육종류 모두 미표시 : 500만원, 원산지 미표시 : 300만원, 식육종류 미표시 : 100만원	○식품위생법 (법개정'05.12.23, 하위법령,'06년 중 개정완료) ○'07.1.1일 시행
○축산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두수 조사 폐지	○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의원 선출을 위해 의무자조금 도입 초년도와 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4년마다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 사육두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	○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폐지하고,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 결과로 같음 - 축산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함 으로써 행정력 낭비 최소화	○축산물의소비촉진 등에관한법률 (시행일 :공 포 후 6월이 경 과한 날) ※현행 「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축산자조금의조성 및운용에관한법률」 로 변경될 예정
○닭, 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	○닭, 오리고기 포장 자율실시	○포장유통 의무화 - 축산물 종류: 닭 오리고기 식육 - 대상영업자 :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21조제 1호의 도축업 영업자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수 이상인 자	○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 조의7
○공익수의사제도 운영	<신 설>	○『공익수의사』 제도 신설 -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에서 공익수의사 선발· 운영(매년 150명) - 현행 공중보건수의사, 공익 법무관 외에 공익수의사로 3년간 복무할 경우, 공익 근무요원 복무대체 - 검역원,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며, 가축방역축산물 위생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	○공익수의사에관한 법률 및 병역법 ○'06.3.24일 공포, '06.9.25일부터 발효 ※ 공익수의사 선발 배치 등은 '07년부터 시행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” 시행	<신 설>	○축산업 등록 농가는 효율적인 방역 및 가축사양 관리 등을 위해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 해야함 ○동 사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○축산법 제23조의 5 및 동법시행 규칙 제5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“가축사육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(농림부고시 제 20048호(04317) ○시행일: '07.1.1
○ 축산물의 표시 기준강화 (국립 수의과학검역원 고시 2005-10호 : 2005.9.23)	가.모든재료 원표시 ○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원재료는 사용 순서에 따라5가지 이상 표시	○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 표시 의무화	○ 축산물의 표시 기준('07.1.1)
	나.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[별표. 1. 가.(10). (가)] ○조제육류 영양소 표시 의무화	○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대상 6가지 추가 (소시지류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유류, 아이스크림류, 분유류)	○ 축산물의 표시 기준('07.1.1)
○수목원조성 사전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	○<신설>	○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성 여부,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	○수목원 조성 및 관타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(2007.6.20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	○<신설>	○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 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이 가능	○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8조의2 (2007.6.20)
○보전산지내 행위 제한 완화	○<신설> ○<신설> ○수산자원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은 산지관리법 적용	○임업용산지 내 산촌개발사업, 수목장림 조성 가능 ○공익용산지내 사찰 신축 가능 ○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	○산지관리법 제12조 (2007. 7. 1)
○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사유 추가	○<신 설>	○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사유에 재해방지 시설 및 산촌개발사업 추가	○산지관리법 제19조 (2007. 7. 1)
○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도입	○<신 설>	○불법 산지전용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	○산지관리법 제26조의2 (2007. 7. 1)
○임업용산지안 에서의 행위제한 완화	○임업용산지에서 삭도 및 케도시설 금지 ○지자체나 국가 이외에는 산책로·산림욕장·탐방로 설치 금지 ○산지전용허가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	○임업용산지 내 삭도 및 케도시설 가능 ○누구나 산림욕장, 산책로, 탐방로 설치가능 ○산지전용허가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외	○ 산지 관리법 시행령제12조 (2007. 7. 1)
○산지전용지의 입 목 축적조사 대상 축소	○산 지 전 용 지에 대 하여 입목축적조사서 제출	○입목축적산출대상물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	○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(2007. 7. 1)
○산지전용허가면적 제한규정 완화	○연접제한저축범위에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면도는 제외	○연접제한저축범위에 주간 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면도를 포함	○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 (2007. 7. 1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사유림매수업무 민간위탁	○국가(지방청, 국유림관리소) 에서 직접수행	○공·사유림 등 토지의 매수 업무를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	○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(2007상반기)
○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반 운영	○<신 설>	○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역 학조사반 운영 - 산림청 : 중앙역학조사반 - 지자체 : 지방역학조사반	○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2 (2007.3.28)
○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권자 확대	○시장·군수·구청장	○시·도지사, 국유림관리소장 추가	○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(2007.3.28)
○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지정	○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읍·면·동	○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의 읍·면·동 추가	○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(2007.3.28)
○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및 이동제한	○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(산림청 행정지침)에 의하여 실시	○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 법에 근거 마련 -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 발급 - 전국의 소나무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 및 이동단속을 위한 운송 정비, 위반여부 확인	○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2, 제13조 (2007.3.28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소나무류 생산·유통 자료 비치	○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만 비치	○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비치	○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(2007.3.28)
○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운영	○고정초소 : 150개소, 1교대(8시간 운영)	○핵심초소 : 50개소, 3교대(24시간 운영) ○일반초소 : 100개소, 1교대(8시간 운영)	○시책 (2007.1.1)
○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방법 개선	○반복발생지 피해목 처리 - 단목벌채(單木伐採) 원칙 ○피해목 처리기준 - 훈증·파쇄·소각병행 ○나무주사시 주입병 사용 ○직경측정시 일반원칙 사용 ○항공방제 : 연 5회	○반복발생지 피해목 처리 - 소구역 군상벌채 群像伐採 원칙 ○피해목 처리기준 - 파쇄·소각 위주 ○주사기로 수목에 직접 주사 ○다목적 자동윤척기 사용 ○항공방제 : 연 3~5회	○시책 (2007.1.1)
○일반병해충 방제 방법 개선	○주요 병해충별로 구분하여 예산 배정·운영 ○지방청·지자체 소관별 방제 체계로 운영	○보조율이 같은 방제예산은 병해충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통합배정·운영 ○지역통합·책임방제체제로 운영 - 지자체 및 지방청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책임방제체제로 운영 - 지자체 및 지방청 합동 예찰·진단반 구성·운영 등	○시책 (2007.1.1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유휴토지조립 추진	<신설>	○유휴토지(전답 등)에 산지과수, 특·약용수 조립 지원 - 5년간 2,500ha, 사업비 78억원 소요 - ha당 2,870천원 지원 (800본 기준)	○시 책 (2007.1.1)
○쓰레기(해안 매립장 주변 포플러나무 조립 권장	○속성수 이용수요 저감으로 포플러나무 조립 중단	○도시주변 쓰레기매립장, 해안 매립지, 축산단지 주변 포플러 나무 식재 권장	○시 책 (2007.1.1)
○숲가꾸기사업 안전 관리강화	○<신 설>	○사업원가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 안전관리를 제도화 -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안전교육의 강화	○시 책 (2007.1.1)
○특 화 품 목 전문 지도사업 실시	○ 전국 시·군 산림조합에 산림 경영지도원(880명)을 배치하여 사유림 경영 지도사업 시행	○산림경영지도원 중 일부 (07년 40명)를 특화품목전문 지도원으로 전환하여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전문 기술 지도 실시	○시 책 (2007.1.1)
○산림사업 통합자금 운용 개선	○ 모든 융자금을 국고융자 예산 으로 지원 ○세부사업간, 동일금리간 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자금조정 지원	○10년이하 단기성자금은 산림 조합자금으로 선지원후 이자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(16억원) ○모든 세부사업간에 통합자금조정 지원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○밤나무 묘목대 지원 중단	○ 밤나무 노령목의 갱신사업자에 대하여 묘목 대를 지원	○ 밤나무 재배면적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묘목대 지원 중단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○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	○<신 설>	○ 산양삼 재배지의 농약검사, 토양 검사, 유전자 검사, 이력관리 카드 제작 등 사업비 지원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산양삼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 개선	○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비를 지원	○산양삼재배단지조성의 경우 종자·묘삼지원은 2천생이하 지원(농약검사 결과를 첨부 하여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지원 제외)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○산촌생태마을 조성	○산촌종합개발사업 <신 설> <신 설> ○산촌개발자문위원회 ○ 마을당 정액지원 - 마을조성(14억원) - 사전설계(63백만원)	○‘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’으로 명칭 변경 ○대상지선정 심사평가제도 운영 - 공무원,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운영 ○설계심사제도 운영 -외부전문가, 현장건설팅요원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○‘산촌생태마을자문위원회’으로 명칭 변경 ○가구수, 마을규모별 차등 지원 - 마을조성(10~16억원) - 사전설계(45~72백만원)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○뚝은 감 생산기반 지원	○대추·호두에 대해서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묘목대, 건조기, 관수시설, 방제장비 등 지원	○뚝은 감의 생산기반 지원 추가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○밤 공동선별비 지원	○더덕, 생도라지, 두릅에 한해 공동선별비를 지원	○밤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추가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산림바이오매스 활용	○<신 설>	○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시범운영(400명) ○산촌마을 화목보일러 보급 (740대) 및 칩보일러 시범 사업(1개소) 추진	○2007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(2007.1.1)
○별목업 등의 산재 보험료 통합 조정 인하	○ 별목업과 기타임업 산재보험료 분리 적용	○ 별목업, 기타임업의 요율을 통합하여 인하 적용	○시 책 (2007.1.1)
○산림 유·무형문화 유산 실태조사 및 관리	○<신 설>	○산림내 유·무형 문화유산 실태를 조사하고 고유번호 부여 등을 통한 종합관리방안 마련	○시 책 (2007.1.1)
○치유의 숲 조성	○<신 설>	○산림이 지닌 보건·의학·치유 기능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 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 ‘치유의 숲을 조성(1개소)	○시 책 (2007.1.1)
○등산학교 운영방식 개선	○ 등산학교 운영자에게 보조금 교부	○ 등산학교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여 운영위탁	○시 책 (2007.1.1)
○등산로 정비사업 개선	○ 대상지역을 백두대간으로 한정	○ 훼손이 심한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추가	○시 책 (2007.1.1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무인도서의 관리	<신설>	○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유형별 (절대보전, 준보전, 이용가능, 개발가능)로 구분, 관리	○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('07 하반기)
○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	<신설>	○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련 상품판매 가능	○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‘07 상반기)
○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	○자연환경보전법 적용	○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-보호대상 해양생물, 회유성 해양동물의 보호 -해양보호구역, 서식지외 보전 기관 지정	○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‘07. 4. 3)
○오염해역준설	○사업수행 방식 →국고보조사업 (국비70%, 지방 30%) 최종 사업수행자 →자치단체(시·군)	○사업수행 방식 → 국가 직접수행 (국비 100%) ○최종 사업수행자 → 지방청	○해양오염방지법
○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도 실시	○62개 연안해역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오염관리	○오염해역, 보전해역 등 해역 이용 현황을 고려한 등급설정 ○연안해역 세분화(항만, 환경 관리해역, 하구역 등)	○해양오염방지법 (고시/’07 하반기)
○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확대시행	○‘원양산’(필요시 해역명) 병기	○원양산(해역명 또는 수역관할 국가명) 함께 표시의무	○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('07. 7.1)
○수산물품질인증 품목확대	○수산물, 수산특산물 등 112개 품목	○냉동품, 횡감용 수산물 등 추가 하여 135개 품목으로 확대	○수산물품질관리법 (’07. 1)
○소형어선원 재해 보험요율 인하	○10톤미만 강선중 선령 20년 미만 (6.05%),20년이상(7.60%)	○5톤미만 강선중 선령 20년미만 (5.45),20년이상(6.84) ○5~10톤미만 강선중 선령 20년 미만(5.75),20년이상(7.22)	○어선원및어선재해 보험보상법시행 규칙('07. 1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양식 수산물재해 보험법 제정	○재해발생시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및“농어업재해대책 법”에 의해 소규모 보상	○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제정 으로 직접피해 양식수산물에 보상	○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법('08.1)
○어장정화정비업 등록사무	○규제일몰제로 효력 상실	○등록요건을 기술인력, 선박, 지분금 및 시설장비를 갖춘 자로 함 ○변경등록 및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무화	○어장관리법 (‘07 하반기)
○어장관리의무 강화	○면허받은 어장에 대하여 매 월 마다 어장청소	○좌 동 ○어구양식시설물의 유실방지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 방치· 투기 금지 ○어구양식시설물 중 부표 또는 부자에 대해 해양수신부령이 정하는 규격품 사용	○어장관리법 (‘07 하반기)
○어장정화 정비 실시부담금	○어장정화정비로 이익을 받은 자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	○부담금 폐지	○어장관리법 (‘07 상반기)
○수산지원조성금 부담의 면제대상 범위 확대	○수산지원조성금 부담의 면제 대상은 지구별 수협 또는 어촌계	○업종별수협도 면제대상에 포함	○기초어업육성법 (‘07상반기)
○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등에 관한 사무 이양	○국가 또는 시·도사무	○시·군·구의 사무로 이양	○기초어업육성법 (‘07상반기)
○2톤미만 선박· 수상호텔 등도 선박검사 시행	○2톤미만 선박 (적용제외 유상 호텔 등 부유식해상구조물 (규정없음)	○2톤 미만 선박과 13인 이상 이상시 사용하는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검사 시행	○선박안전법 (‘07. 11 예정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선박의 건조검사 시행	○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및 강회플라스틱제 선박 등 특수 재질로 건조되는 선박 *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	○모든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 시행 * 건조검사를 할 수 없는 수입 선박 등도 건조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음	○선박안전법 (’07. 11 예정)
○만재흡수선 표시 대상선박 확대	○국제항해 취항선박 및 길이 24미터이상 선박 ○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, 위험물 산적운송선	○국제항해 취항선박 ○길이 12미터 이상선박 ○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중 여객선, 위험물 산적운송선	○선박안전법 (’07.11 예정)
○선박위치발신장치 (VMS) 의무화	<신설>	○장관이 정하는 선박은 선박 위치 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 하여야 함	○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법령 (고시:’07하반기)
○선박결함 신고제도 시행	<신설>	○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해양 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출항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	○선박안전법 (’07.11 예정)
○담보권설정 방치 선박의 작권처리에 관한 법률시행	○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의 작권제거시 담보권자의 동의	○담보권자가 폐선 처리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에서 작권으로 제거가능	○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위법령 (’07상반기)
○항로표지시설 보호강화 및 훼손 행위 금지	○더럽히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	○낙서, 물건투척, 쓰레기폐기물, 낙시 등 행위 금지	○항로표지법 (’07년 하반기)

< 복지 분야 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시행일
○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	○1인 418,309원 2인 700,849원 3인 939,849원 4인 1,170,422원 5인 1,353,242원 6인 1,542,382원	○1인 435,921원 2인 734,412원 3인 972,866원 4인 1,205,535원 5인 1,405,412원 6인 1,609,630원	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6조 2007. 1. 1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금급여 기준인상(가구별 최고금액)	○1인 357,909원 2인 599,653원 3인 804,143원 4인 1,001,424원 5인 1,157,846원 6인 1,319,677원	○1인 372,978원 2인 628,370원 3인 832,394원 4인 1,031,467원 5인 1,202,484원 6인 1,377,214원	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8조 2007. 1. 1
○부양의무자범위 축소	○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	○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	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2007.1.1
○긴급복지지원비 인상	○생계지원 1인 418,309원 2인 700,849원 3인 939,849원 4인 1,170,422원 5인 1,353,242원 6인 1,542,382원	○생계지원 1인 435,921원 2인 734,412원 3인 972,866원 4인 1,205,535원 5인 1,405,412원 6인 1,609,630원	긴급지원 사업지침 (2007.1.1)
○장애수당지급 대상 확대	차상위계층 제외	차상위계층 확대	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07. 1. 1
○장애수당 인상	○중증장애인 월7만원 경증장애인 월2만원	(재가장애인) - 중증 : 기 초 月130천원 차상위 月120천원 - 경증 : 기초,차상위 月30천원 (시설장애인) - 중증 月70천원 경증 月30천원	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07. 1. 1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시행일
○장애아동부양 수당 인상	○1인당 월7만원	- 중증 : 기 초 月200천원 차상위 月150천원 - 경증 : 기초차상위 月100천원	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07. 1. 1
○장애인 LPG보조금 지원제도 변경	소득이나 장애정도와 관계 없이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월 250 ℓ 까지 지원	○ 2006.11.1부터 신규지원 불가능 ○ 기존 수혜자의 경우 - 1~3급 장애인은 2009.12.31까지 현행대로 유지, 2010년부터 지원중단 - 4~6급 장애인은 2007.1.1부터 지원 중단	"
○장애인선택적복지 제도	〈 추 가 〉	○ 대상 : 중증장애인 (20세이상) ○ 사업내용: -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을 공급하여 신변, 일상생활, 이동 및 활동 등을 돕도록 함	"
○장애인월동비지원	〈 추 가 〉	○ 대상 : 중증장애인 ○ 년 126,000원 지원 (1월,11월 2회 지급) ○ 사업내용: - 난방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난방비 지원	"
○독거노인 도우미 파견	〈 신 설 〉	○ 대상 :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가구(조손가구 포함) ○ 내용 : 독거노인의 일상 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읍·면·동당2~4명씩 배치,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,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	노인복지 사업안내 2007. 1. 1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시 행 일
○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운영	〈 신 설 〉	○ 대상: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 ○ 내용: 차상위 계층 중증 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및 가족의 사회 경제활동 기반 조성 ○ 지원기준: 1인당 월 20만원	”
○ 노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	〈 신 설 〉	○ 대 상: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 ○ 내 용: 차상위 계층 중증 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지원,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및 가족의 사회 경제 활동 기반 조성 ○ 지원기준 - 실비요양시설 입소: 1인당 월 18만원 - 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: 1인당 월 30만원	노인복지 사업안내 2007. 1. 1
○ 입양아동지원확대	○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 -양육보조금 : 1인당 525천원/월 -의 료 비 : 1인당 2,400천원이내/년	○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인상 -양육보조금: 1인당 551천원/월 -의료비: 1인당 2,520천원이내/년 ○ 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(신규) -만12세이하 국내입양아동 -입양아동양육수당: 1인당 100천원/월 ○ 입양장려금지원(신규) -국내입양시 입양수수료지원 -1회 2,000천원/1회	아동복지 사업안내 2007. 1. 1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시 행 일
○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	〈신 설〉	○부모(요보호아동의 경우 후 원자)가 한도액(월 3만원 이내) 범위내에서 일정액 을 적립하면 국가가 1:1 매칭펀드로 지원하여, 18 세 이후에 학비·창업지원 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자 산형성지원	아동복지 사업안내 2007. 1. 1

< 보건위생 분야 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○ 의료법인 부대 사업범위 확대	○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 교육 교육 실시 ○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〈추 가〉	○ 「노인복지법」 제 31조제 2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·운영 ○ 「장사등에관한법률」 제 25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·운영 ○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·운영 ○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 정보시스템 개발·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○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, 이용업,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	○ 의료법제42조 (부대사업) - 2007. 4. 28 시행
○ 신 의료 기술의 평가	〈신 설〉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등에 관한 평가 실시	○ 의료법제45조의3 (신의료기술의 평가) - 2007. 4. 28 시행
○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 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	〈신 설〉	○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와 관련하여 환자 또는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※선택정보 제공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	○ 의료법제37조의2 제3항 - 2007. 4. 28 시행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시행일
○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 신설	○ 배추의 절임 등 원료의 전처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	○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 신설	2006.12.27 입법예고 - 시행일 2007.하반기
○ 김치 절임 식품등 품질유지기간 표시제 도입	○ 유통기한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법적으로 유통·판매되지 못함	○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으로 표시가능 - 대상:김치·절임식품,간장 된장,고추장,식초,다류,잼류 벌꿀,전분 등 -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경우 유통업체에서 가격인하 묶음판매 등 형태로 유통가능	2007년 하반기
○ 과자류,면류,레토르트식품,음료류에 당,트랜스지방 등 함량표시 실시	〈신 설〉	○ 과자류,면류,레토르트,음료류에 비만,당뇨,심혈관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당류,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함량표시 의무화	2006.9.8 표시기준개정 2007.12월 시행
○ 일반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입	〈신 설〉	○ 대상:영업장면적 300m² 이상 갈비,등심등 쇠고기 구이 판매 일반음식점 ○ 방법: 국내산-한우, 젓소, 육우 등으로 구분 외국산-수입국가명 표기	2007.1.1 시행
○ 식품첨가물 첨가시 주의문구 표시	〈신 설〉	○ 수산화암모늄,초산,빙초산,염산,황산,수산화나트륨,표백분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시 소비자보호 취급상 주의문구 제품 표기	2007.12.1 시행
○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,영양사 위생교육 강화	○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조리사,영양사에게 교육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	○ 2년 마다 의무적 위생교육 실시	2007.1.1 시행

〈 환경 분야 〉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일부품목 범위 확대	○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화장품 포장재 중 유리병 제외	○ 화장품 포장재 범위 확대 - 유리병 포함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(2007.1)
RFID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*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; 무선주파수인식기술)	○ 감염성폐기물의 인수 인계를 종이전표 또는 적법처리입증정 보시스템에 전산입력	○ RFID 기술을 도입, 감염성폐기물 인수인계시 전자태그를 부착한 보관용 기를 리더기로 인식하여 정보처리	○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(2007.1)

〈 수질 분야 〉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
○오수·분뇨와 축산폐수를 분리 하여 별도 관리 (법령 정비)	○오수·분뇨 ○축산폐수 ⇒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 관한법률로 통합 관리	○오수·분뇨는 “가정하수”로 명칭 변경하여 “하수 도법”에 통합관리 ○축산폐수(가축분뇨)는 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(제정)로 별도 관리	○하수도법 ○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2007.9.28)
○유독물 취급시설 정기검사 실시	○가스상 유독물의 제조· 저장 또는 운반시설	○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○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·저장하는 시설	○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(2007.1)
○폐·하수종말처리 시설 수질자동 측정기 부착 의무화	〈신설〉	○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및 10,000m³/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시 설의 배출수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	○수질환경보전법 (2007.1)

< 토지 분야 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새 주소 병행사용	신 규	-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법률이 2006.10.4 공포됨에 따라 2007.4.5 부터는 도로명주소와 지번(기존)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, 2012.1.1 부터는 전면 사용 - 종전 : 대전 중구 선화동 287 - 변경 : 대전 중구 선화동 중앙로 155(선화동287)	-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법률 제19조 2007. 4. 5
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개선	신 규	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「토지행위규제안내서」 첨부 발급	토지이용규제기본법
지적측량 A/S에 운영	확 대	- 지적측량결과의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측량 등 A/S 실시 - 2개시군 → 16개시군	- 충청남도 지적업무 추진지침 2007. 1. 1
한국토지정보 시스템확대운영	확 대	인터넷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 열람서비스 확대시행	2007. 1. 1
지적측량결과부 시행	확 대	- 다양한 지적측량결과 정보제공 - 1종 「지적측량성과도 ⇒ 지적측량결과부」 - 7종 : 지적측량결과부, 측량성과도, 지적측량 수행현황, 측정점위치설명도, 토지공시사항, 참고도, 지적측량수행자 - 고객위주의 성과도 발급방법 개선 -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「지적측량결과부」 신속제공 - 방문, 우편(측량자 위주) ⇒ 인터넷 (이미지 파일) 등	제도개선
조상땅찾아주기 민원서비스	확 대	현재 신청 대상자가 시도에 방문 신청하고, 시군구 방문시 신청자격 등을 확인 후 FAX로 시도에 이송 ⇒ 시군구에서도 직접 성명(명칭)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확대 실시	제도개선

<여성분야>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가정폭력예방 교육	<신설>	○ 초·중등학교장의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교육 의무화	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조 의 2 (2006.10.29)
가정폭력피해 아동 취학지원	<신설>	○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 반한 아동의 주소지외의 지역 에서의 취학지원 의무화	법 제4조의 4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3 (2006.10.29)
가정폭력상담원 교육 훈련 시 설 신고제 도입	○사회복지법인, 비영 리법인 등이 상담 원 교육훈련 자율 운영	○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법인 등은 시장·군수·구청 장에게 신고 -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1㎡ 이상 - 총 이수시간 100시간 이상 등	법 제8조의 3및 동법시행규칙 제10~11조 (2006.10.29)
가정폭력상담소 설치 및 배치기준	○설치기준 -상담실 구비 -일시보호시설은 숙식에 필요한 시 설 구비 ○종사자 배치기준 -상담소장이 상담원 겸임시 1인 운영 가능	○설치기준 -면적이 최소 49.45㎡이상 -사무실, 면접·전화상담실, 회의 실구비 -일시보호시설은 9.9㎡이상 보 호실 구비 ○ 종사자 배치기준 -상담소장 및 상담원 2인 이상 배치 -재정여건 등 감안, 제한적 겸임 -상담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	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(2006.10.29)
가정폭력상담소 운영기준	-	○주5일, 평일8시간 운영 원칙 ○상담계획 수립 및 경과에 따른 귀가· 전원조치 ○관리, 사업, 재무·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비치 등 명문화	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(2006.10.29)
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배치기준	○설치기준 -입소정원 1인당 3.3㎡이상 -설비기준 없음	○설치기준 -입소정원 1인당 6.6㎡이상 -거실, 사무실, 상담실 등 구비	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(2006.10.29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											
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배치기준	○종사자 배치기준 -시설장과 상담원 겸 임 가능	○ 종사자 배치기준 -재정여건 등을 감안, 제한적으 로 겸임 -시설 정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<td>5~10인</td><td>11~30</td><td>31인이상</td></tr> <tr> <td>시설장</td><td>1</td><td>1</td><td>1</td></tr> <tr> <td>상담원</td><td>2</td><td>3</td><td>4</td></tr> </table> ※ 장애인보호시설 : 시설장1인, 상담원1인 입소정원 10인당 보조인력 1인 증원배치	구 분	5~10인	11~30	31인이상	시설장	1	1	1	상담원	2	3	4	법 제7조 동 법시행규칙 제 6조 (2006.10.29)
구 분	5~10인	11~30	31인이상												
시설장	1	1	1												
상담원	2	3	4												
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준	-	○ 시설장의 입소자 관찰 지도 및 경과에 따른 귀가·전원조치 ○ 관리, 사업, 재무·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비치 등 명문화	법 제7조 동 법시행규칙 제 6조 (2006.10.29)												
보호시설의 종류	○단기보호시설 -6월이내 보호, 3월 연장가능	○보호시설 세분 -단기보호시설(6월이내 보호 3 월 연장가능) -장기보호시설(2년 범위내) -외국인보호시설(2년 범위내) -장애인보호시설(2년 범위내)	법 제7조의 2 (2006.10.29)												
상담소 및 보호 시설의장 자격기준	-	○종사자의 자격기준 -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 상 종사한 자 -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7급 이 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-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방지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※위의 자가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격 인정	법 제8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9조 (2006.10.29)												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상담소 및 보호 시설 상담원 자격기준	○ 상담원 자격기준 -대학 또는 전문대학 을 졸업한 자 -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-사회복지시설 ·단체의 임직원(단순노무자 제 외) 또는 사회복지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-성폭력 ·모부자 관련 상담소 ·보호시설 등 상담원 경력자, 또는 상담원인 아닌 자 중 3 년 이상 경력자(단순노 무자 제외)	○ 상담원 자격기준 -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-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-사회복지시설 ·단체의 임직 원(단순노무자 제외)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자 -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(외국인 시설에 한함)	법 제8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9조 (2006.10.29)
가정·성폭력 피 해자 치료비용 지급 및 구상권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피해자 치료보호 비용 지급 임의규정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구상권행사 의무규정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치료보호 비용 의무화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 임의규정화	법 제18조 (2006.10.29)
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산층 까지 확대	○차등보육료 지원 -도시근로자 가구 월평 균소득 70%(4층까지 지원) ○만 5세아 무상보육료 -도시근로자 가구 월평 균소득 90%	○차등보육료 지원 -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%(5층까지 지원) ○만 5세아 무상보육료 -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%	영유아보육법 제36조 (2007. 3. 1)
민 간 보 육 시 설 의 기본보조금 지원확대	○민간보육시설 영아반 (0세~2세)별 지원금액 - 0세 : 249천원(3명) - 1세 : 104천원(5명) - 2세 : 69천원(7명)	○민간보육시설 영아반(0세~2세) 별 지원액 인상 - 0세 : 292천원(3명) - 1세 : 134천원(5명) - 2세 : 86천원(7명)	영유아보육법 제36조 (2007. 3. 1)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국공립 보육시설 확충	○신축 지원 - 개소당 361백만원	○신축 지원 - 개소당 361백만원 ○공동주택 국공립 전환지원 - 신규 개소당 90백만원 - 기존 개소당 40백만원	영유아보육법 제36조 (2007. 3. 1)
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보육료지원	〈신설〉	○대상 : 1,080명/영유아(0~5세) ○지원 : 연령별 보육료 전액	道 특수시책 (신규) (2007. 1. 1)
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	○대상 : 보육교사 3,710명 ○지원 : 1인/월/50천원	○대상 : 종사자 6,021명 ○지원 : 1인/월/50천원	道 특수시책 (신규) (2007. 1. 1)
보육교사배치기준 특례인정 범위 구체화	○대상 : 도서·벽지 농 어촌 소재 보육시설 ○절차 : 시군보육정책 위원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 ○내용 : 범위없음	○대상 : 도서·벽지·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○절차 : 시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 ○내용 : 특례인정범위 - 0세 : 1명 이내(4명) - 1세 : 2명 이내(7명) - 2세 : 2명 이내(9명) - 3세 : 4명 이내(19명) - 4세이상 : 4명 이내(24명)	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(2007. 3. 1)
보육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	○ 대상 도서·벽지·농어촌 21~39인시설 ○ 절차 : 시군보육정책 위원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 ○ 내용 : 한시적용('07.2.28)	○대상 : 도서·벽지·농어촌 21~39인시설 ○절차 : 시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 ○내용 : 한시적용 폐지	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(2007. 3. 1)
재무회계규칙의 회계보고와 기본 보조금 연계지원	○ 대상 : 영아반 운영 민간시설 ○ 지원 : 기본보조금 동일	○대상 : 영아반 운영 민간 시설 ○지원 : 기본보조금 차별화 - 회계보고시 : '07년 단가 - 미보고시 : '06년 단가	보육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조 (2007. 3. 1)
유아반 보육료 수 납한도액 인상을 제한 폐지	○ 대상 : 정부미지원시설 유아(3세이상) ○ 인상을 : 전년대비 3%이내	○대상 : 정부미지원시설 유아 (3세 이상) ○인상을 : 도지사 자율적 결정	영유아보육법 제38조 (2007. 3. 1)

〈 민방위 분야 〉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
민방위대 편성 연령단축	20세~45세	20세~40세(5년 단축)	민방위기본법 제17조 (2007.1.1)
민방위교육 시간단축	연간 8시간	연간 4시간(4시간 단축)	소방방재청 지침 (민방위팀-382, '06.7.27)
민방위소양 강사제도 폐지	민방위소양강사에 의한 안보 등 소양교육실시	민방위소양강사에 의한 강의폐지(동영상, VTR 등 시청각 교육으로 대체)	소방방재청 지침 (민방위팀-382, '06.7.27)